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성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932
----------	-------

발의연월일 : 2025. 12. 4.

발 의 자 : 진성준 · 임오경 · 김교홍
강준현 · 황명선 · 안호영
정태호 · 안도걸 · 위성곤
문정복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청도열차 사고('25.8.19.), 태안화력발전소 사고('25.6.2.), 도로공사 건설현장 사고('25.2.25.) 등 공공기관에서 잇따라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해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 확립과 기관장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자율 경영 보장, 경영효율성 제고, 경영혁신 추진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전경영에 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현재 기획재정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운영중이나 법적 근거규정이 명확하지 않음.

또한 기관장의 경영성과 및 청렴성 등에 대한 통제 장치는 마련되어 있으나, 안전경영 원칙 및 안전경영에 대한 기관장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는 미흡한 상황임.

이에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원칙을 규정하여 안전 경영 문화를 확립

하고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운영 중인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며, 기관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여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기관장의 직무정지를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사 또는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관장의 안전경영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5조의2 및 제53조의4 신설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2106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을 “단서,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으로 한다.

6의2. 제15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의 안전경영 등
제3장에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공공기관의 안전경영) ① 공공기관은 경영활동에서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안전 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5조제6항 중 “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을 “제8항,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을 “제8항,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으로 한다.

제53조의4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4(기관장의 직무정지 등)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②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관장의 직무정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2106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법률 제21065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 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 의·의결하기 위하여 재정경제 부장관 소속하에 공공기관운영 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제8조(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설 치) ----- ----- ----- ----- ----- -----.
1. ~ 6. (생 략) <u><신 설></u>	1. ~ 6. (현행과 같음) <u>6의2. 제15조의2에 따른 공공기 관의 안전경영 등</u>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10. 제35조제2항, 같은 조 제3 항 단서 및 제52조의3제3항 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준 정부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 임이나 해임 건의 등	10. ----- -- <u>단서,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u> ----- ----- ----- --
11. ~ 17. (생 략) <u><신 설></u>	11. ~ 17. (현행과 같음) <u>제15조의2(공공기관의 안전경영)</u> <u>① 공공기관은 경영활동에서 국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u>

	<u>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u>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안전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안전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u>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생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⑥ -----제8항,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제2항-----
⑦ (생략)	⑦ (현행과 같음)
제34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34조(결격사유)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1항, 제31조제7항, 제35조제2항·제3항, 제36조제2항, 제48조제4항·제8항	2. -----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해
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② · ③ (생 략)

<신 설>

제52조의3제3항 및 제53조의4
제2항-----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53조의4(기관장의 직무정지 등)

①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의 장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대재
해에 이르게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수사기
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가 개시
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거나 그 임명
권자에게 직무를 정지시킬 것
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②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등의 수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을 해임하
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요구할 수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
쳐 임명된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야 한다.
--	------------------